[회의록]제207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복지사협88차

1. 회의일시: 2025년 11월 26일(수) 오후 6시 30분

2. 회의장소: 조합원 활동공간 “마중”(중앙로 80, 3층)

3. 회의참석: 이광희 이사장, 박준영 부이사장, 신승훈 전무이사, 염은경, 김선기, 천혜란, 서연남 (이상 이사, 총 7명)
참관 : 공영훈
불참 : 이윤승, 최효심, 정연우, 이창호, 김태성(5명)

4. 성원보고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2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7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.

5. 전차회의록
- 의장이 9월 25일(목) 제206차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
6. 보고안건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.

7. 논의안건

제1호 의안 : 2025년 9월 ~ 10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**제58조(사업의 이용)**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(6차 개정)

1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2.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3.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(7차 개정)
5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7.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(7차 개정)
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9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7차 개정)

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.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
3. 제안 내용

- **25년 9월 신규 조합원(25명, 17명(가구원))** : 김소영, 권옥순(문단일, 문성호, 문예영), 유상조(김성문, 김정훈), 신난순, 김기순(심현영), 김영자(장성만), 전영임, 김만수, 윤옥희, 이금옥, 정세광, 조명숙(정병규), 박미숙(박경준), 신선순(김진하), 이영산, 한백선(황태홍), 이성식(서순이, 구자란, 이부흥), 여향연, 한지수(김선임), 김봉국, 이상원, 한은희, 정복희(정연홍), 김준철, 이은순(한상운)
- **25년 10월 신규 조합원(9명, 9명(가구원))** : 박창규(서순진, 박윤민, 박윤환), 함현자, 윤남규(김다빈), 이명래(길미숙, 이동호, 이휘연, 이정민), 이한직, 김명순(김준성), 신향숙, 김범섭, 정영자

- 총 34세대(가구원 26명) ***총조합원수 1,781명(25년 10월 말 기준)**
- 이상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김선기 이사 : 조합원 배가 운동과 관련하여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공제사업 설명회와 강원의료복지사협 조합 이용 설명회를 같이 진행하는 합동설명회를 제안함.

□제2호 의안 : 노인일자리 수행기관(G케어매니저) 선정에 따른 (전담)인력 채용 진행의 건

1. 제안 배경
- 조합은 10여년 동안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관으로 “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” 활동을 공익형 일자리(월 30시간)로 운영해 옴.(참여인원 30명)
- 그 간의 활동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와 돌봄의 연계 및 시너지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원주시 경로복지과에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(사회서비스형)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.
- 당초 노인일자리 100명에 전담인력 1명으로 요청하였으나, 노인일자리수 증가에 따라 최종 노인일자리 120명에 전담인력 1명으로 결정되었고, 11월 12일 수행기관 공모 서류 제출,
 11월 26일 수행기관 사업운영 PT를 진행함.
- 또한, 기존 건강반장이라는 명칭에서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G케어모델(강원도 통합돌봄모델)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“G케어매니저”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어 진행키로 함.
- 일자리의 근무 형태도 공익형 일자리에서 역량활용형 일자리(기존 사회서비스형)로 변경되어 일 3시간(주5일), 60시간 근무 형태로 노인일자리 120명과 전담인력 1명의 채용이 필요한 상황임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노인일자리 인원 120명 채용(월 급여 76만원 내외)
- 전담인력 1명 채용(월 급여 216만원(시 지원))
 별첨) G케어매니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서류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이광희 이사장 : G케어매니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.

□제3호 의안 : 2025년 강원상승(SE)자금 융자 사업 신청의 건

1. 제안 배경
- 조합은 21년 9월 ~ 22년 6월 까지 “원주시 코로나19 재택치료센터”를 운영하였음. 8월 21일, 그 당시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와 관련,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산정기준(청구에 대한 진료기록 증빙자료 누락)을 위반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9,360,940원(1건 83,260원, 1,794건)의 환수 통보를 받게 되었음.
- 25년 12월 또는 26년 1월부터 환수 예정.(건보공단 가지급금에서 10% 환수(6개월) 월 450~480만원 환수 예상, 이후 잔여액 청구서(일시불, 할부 가능(유이자))발송.
- 이로 인해 26년 운영에 있어 운영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,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강원상승(SE)융자 사업을 통해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신청하게 됨.
 (11월 6일 임원 단톡방 보고 및 확인)
- 운영자금으로 7,000만원을 신청하고자 하며, 인건비 4,000만원, 사업개발비(의료장비, 3,000 만원) 등 에 활용하고자 함.(이자율은 4% 이나 감면 혜택 적용시 2~3% 예상.)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- 차입기관 : (사)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
- 차입금액 : 금 7천만원(예정)
- 금리 : 4%
- 차입용도 : 운영자금(인건비, 사업개발비 등)
- 활용방안 :
 재택의료센터의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력 확대 가능성 및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의료진(의사, 간호사)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활용코자 함.
 외래 및 재택의료사업 의료기기 확충을 통해 외래와 재택의료서비스 수요 확대, 이용자 증가, 만족도 증대 등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구입에 활용코자 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박준영 부이사장 : 사회가치연대기금으로 1억원을 받아서 26년도에 대출 공고 예정임, 3.75% 이자율이고 1년 거치, 2년 상환으로 공고할 예정임을 안내함.

제4호 의안 : 공생추진위원회 실무TF 구성 및 추진의 건

1. 제안 배경
- 그간 공생추진위원회 진행을 해오며 돌봄 학습과 돌봄사업소 설립을 위한 실무 논의 등 을 지속해왔으나 전담 인력 부재, 역할의 한계 등 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.
- 이에 돌봄사업소 설립 실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 TF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함.
- 실무 TF 명단 : 천혜란, 조일구, 박준영, 신승훈
- 실무 TF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아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코자 함. (신승훈 제외)

상임 임원 및 비상임 이사의 활동 보수규정

· 개정 2024-06-17
· 제정 2017-02-16

제2장 기 본 급

제4조(기본연봉)
① 상임 임원의 연간 기본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② 조합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비상임 이사의 경우, 직무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일비(참석수당)로
지급하고 활동비(경비)는 법인카드로 사용 한다.
- 일비(참석수당) : 4시간 미만 10만원, 4시간 이상 20만원
- 활동비 : 실비 처리

제5조(지급기준)
①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으로 정한다.
- 업무 관련 각종 자문회의
- 업무 관련 포럼, 세미나 등 학술회의
- 업무 관련 초청회, 워크숍 등 각종 간담회
- 기타 회의 등 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
② 직무수당(일비, 활동비)은 업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근일, 시간, 내용, 서명 등을 받아 보관하고 직무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로 하여 지급한다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공생 TF 구성 및 추진 승인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5호 의안 : 예산 항목 간 조정(수정)의 건

1. 제안 배경
- 25년 예산안 집행에 있어 조합의 내·외부 및 인적, 물적 환경 변화에 따라 초과 집행 부분 발생.
- 예산 항목 간 조정을 통해 25년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(총회자료집)2025년 수지예산(안)
 제 5조 : 예산의 항간 전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제 6조 : 사업량의 증감, 세율변동,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 할 수 있다.

3. 제안내용
- 예비비 9,442,905원 전액 조정

구분	예산액	집행금액 (1~10월)	집행비율	조정금액	수정금액	수정후 집행비율
지급임차료	2,064,000	3,618,240	175.3%	3,536,000	5,600,000	64.6%
소모품비	9,330,000	11,351,882	121.7%	2,670,000	12,000,000	94.5%
지급수수료	20,097,000	22,061,246	109.8%	3,236,902	23,333,905	94.5%

* 지급임차료(175.3%) : 조합원 활동공간 마련, 이전으로 인해 9월부터 임차료 추가 발생(마중 880,000원/월, 복합기 132,000원/월)
* 소모품비(121.7%) : 조합원 활동공간 마련, 이전으로 인한 각종 소모품(비자산성, 일회성) 구입 증가
* 지급수수료(109.8%) : 조합원 활동공간 마련, 이전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증가(입주 전 에어컨 등 청소 등)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**제6호 기타 논의 안건**

기타 논의 안건 :

1. 제안 배경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7.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

-> 결정 사항 :

- 추가 의견 -

서 명

의장 이광희 **이사 박준영**

이사 염은경

이사 신승훈

이사 김선기

이사 천혜란

이사 서연남